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11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일

발 의 자 : 이정인, 양민규, 오현정,

장상기, 문병훈, 오중석,

김광수, 박순규, 노승재,

김소영, 김화숙, 김제리,

김수규, 신정호, 임만균,

김재형, 홍성룡, 봉양순,

김용연, 김소양, 문장길,

김혜련, 이영실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탈원화로 요약되는 지역사회 재활을 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 사회기술의 미약함 등을 이유로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등에 대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심판에 대한 비용 등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어 그 취약점이 극대화 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돕고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서 법익을 지키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안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설></u></p> <p><u>3. ~ 5.</u> (생략)</p>	<p>제5조(지원 대상) ----- ----- ----- -----</p> <p>1.·2. (현행과 같음)</p> <p><u>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u></p> <p><u>4. ~ 6.</u>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제3호 신설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대상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434,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434,500천원으로 연평균 286,9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 정신질환자 통계는 없음. 단, 알코올, 니코틴 의존, 우울증 등 포함한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만 18세 이상 74세 이하 조사대상 중 25.4%이며, 1년 유병률은 11.9%임.(2016년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 본 추계에서는 정신질환자 대신 서울시 거주 ‘등록 정신장애인’ 중 1-2급인 4,099명을 기준으로 하여 5%인 205명이 후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중 균등분할하여 지원(발굴)하는 것으로 전제
 - ※ '18.12월 말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등록 정신장애인 1-2급 4,099명(보건복지부 통계시스템)
 - 유사 사업인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과 독거어르신 후견지원사업 단가 준용하여 비용산출

※ 산출된 지원단가 : 후견심판 청구비용 500천원/건, 후견활동 지원비용 월150천원/명(피후견인 기준)

- 정신질환자 후견지원 사업의 홍보 및 교육지원 비용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90,000천원)을 준용하되, 정신장애인의 숫자가 발달장애인의 절반수준(51%)임을 감안하여 45,000천원으로 산출

※ '18.12월 말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등록 정신장애인은 16,365명이고 지적, 자폐장애인은 32,029명
임(보건복지부 통계시스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434,500천원(연평균 286,900천원)

- 후견심판 청구 비용 + 후견활동 지원 비용 + 교육, 홍보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5조 제3호	후견심판 청구 비용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102,500
		후견활동 지원 비용	73,800	147,600	221,400	295,200	369,000	1,107,000
		교육, 홍보 비용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소계(b)	139,300	213,100	286,900	360,700	434,500	1,434,500	
□총 비용(b-a)		139,300	213,100	286,900	360,700	434,500	1,434,500	

○ 후견심판 청구 비용 ≙ 102,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후견심판 청구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후견심판 청구 비용 : 20,500천원

· 연간 후견심판 청구 비용 = 건당 후견심판 청구비용 × 청구건수
= 500,000원 × 41건
= 20,500천원

○ 후견활동 지원 비용 ≙ 1,107,000천원

- 산출방식 : 전년도 후견 지원대상은 다음연도에 누계로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식
- 연간 후견활동 지원 비용 = 1인당 지원비용 × 연간 피후견인 수
 - 2020년 후견활동 지원 비용 = 1,800천원 × 41명 = 73,800천원
 - 2021년 후견활동 지원 비용 = 1,800천원 × 82명 = 147,600천원
 - 2022년 후견활동 지원 비용 = 1,800천원 × 123명 = 221,400천원
 - 2023년 후견활동 지원 비용 = 1,800천원 × 164명 = 295,200천원
 - 2024년 후견활동 지원 비용 = 1,800천원 × 205명 = 369,000천원

○ 교육, 홍보 비용 ≙ 225,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교육, 홍보비용)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교육, 홍보 비용 : 45,000천원
 - 연간 교육, 홍보비용 : 전담관리자 인건비, 강사비, 홍보자료 인쇄비 등 포함

【참고】 후견지원사업(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독거어르신 후견지원 사업)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독거어르신 후견지원 사업 ※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운영
심판청구비용	500	500
후견인활동비용	1,800 (월 150)	2,400 (월 200)
홍보 및 교육지원	90,000	-
'18년도 후견지원 실적 (피후견인 기준)	76명	58명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